

국유임산물(직영벌채 생산재) 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예정가격 : 123,100,000(일억 이천삼백일십만원정)

나. 반출기간 : **인도일로부터 3개월**

산물소재지	벌채구역면적 (벌채면적)	수량				용도	
		수종 및 재종	원목본수 (본)	원목재적 (m ³)	생산재적 (m ³)		
제천. 백운 원월. 산8-1 외1	11.1ha (10.3ha)	합 계	14,921	1,512.62	1,512.62		
		소나무	246	30.83	30.83	침 · 펄프	
		낙엽송	2,477	533.64	533.64	제재	
		낙엽송	7,261	617.54	617.54	침 · 펄프	
		잣나무	1,347	121.91	121.91	침 · 펄프	
		기타활엽수	3,590	208.70	208.70	침 · 펄프	
계약조건에 부하는 사항							
산물 소재지			운재로(m)		국유림 사용허가면적 (ha)		
제천. 백운. 원월. 산8-1			신설	기존	1.0		
			-	317			

2.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www.onbid.go.kr)으로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별 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매수 산물의 반출로 발생하는 민원은 매수자(계약자)가 책임처리 합니다.

나. 매수 산물 반출시 수반되는 산지전용(형질변경)이 발생될 시 별도로 허가 등을 받습니다.

다. 사유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은 매수자(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산물의 반출 시 사유지를 경유할 경우 매수자는 반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매수자가 일괄 책임처리 하셔야 합니다.

라. 매수자(계약자)는 반출 완료 후 운재로 전구간에 대하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원칙적으로 되메우기 복구)하여야 하며, 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횡단배수로 설치 등) 및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마. 운재로 추가 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 노선변경 및 추가 개설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우리 관리소의 승인을 얻은 후 실행하여야 합니다.

바. 입목 반출 시 임도 및 도로 등 피해에 대하여 매수자가 책임처리 합니다.

※ **임도를 통한 반출 시 측구 및 사면 훼손 등 기타 임도 훼손에 대해서는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사법처리)**

사. 매수자(계약자)는 입찰 공고문 및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위치도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아. 입찰 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목재 상태와 수량, 운반조건, 품질 등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계약체결 후에는 매각 임산물의 수량, 품질 등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자(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매수자(계약자)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안내

- 일 시 : 2022. 05. 18. (수) 오후 16:30

- 출발장소 : 원월리 임도 입구(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41-68)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가. www.onbid.co.kr(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나. www.forest.go.kr(산림청 홈페이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2. 05. 12. (목) 14:00 ~ 2022. 05. 19. (목) 16:00

나. 전자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05. 20. (금) 10:00, 단양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개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예정가격미만의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아니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참가자격

-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관서에 체납액이 없고,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는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보증서로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
(분할 납부 불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 미입금시 입찰무효처리
다.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거나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관련 사항 참조

10.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금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도 동일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위 “가”항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시 제출서류

- 가. 인감증명서 1부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다. 인감도장 및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반출기간 이상 보증 필수
-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3. 기타 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매각 입찰에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 나. 응찰자는 “불임”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및 동계약서의 제1조 내지 제13조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기준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관리소에 비치되어 있는 재적 조서 및 현지를 숙람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 법령상 규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관리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매수산물 반출 시 주변 입목을 손상, 파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파손, 손상한 때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 마. 매수산물 반출 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생산확인표** 발급을 신청 후, 우리 관리소로부터 별도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바. 입산물 반출에 따른 운재로의 사유지 통과 및 운재로 복구를 본인(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아. 계약보증금을 증권으로 제출(납부)하실 경우 반출예정기간보다 1개월 이상을 더하여 기간을 넉넉히 하시어 제출(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출기간을 연장 하실 경우에도 증권 기간을 1개월 이상을 더하여 제출(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단양국유림관리소 계약담당(**043-420-0312**)으로, 매각임산물에 관한 사항은 경영조성담당(**043-420-03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여 및 투찰 등 온비드 시스템에 관한 것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또는 전화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5. 12.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

[붙임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 · 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 경계, 사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반출(별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별채)면적			m ²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원목 재적[m ³]	조재(造材, 재목 만드는 것)/제탄(製炭, 탄 제조하는 것)비율(%)	매각수량(생산지정)[m ³]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

인

매수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주: 입목 · 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 · 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제1조(대금납입)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계약담당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어, 이 경우 매수인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계약담당관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매수인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별채구역위치도, 별채구역도 및 매복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매수인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매수인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별채구역 안에 미별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흑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m²당 단가×미별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m²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매수인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매수인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매수인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관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계약담당관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별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속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별도목(베어진 나무)·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계약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관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보완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매수인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산림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산림 기초 단위) · 소반(임반을 지형지물, 유역 경계, 사업상 취급에 따라 구획한 단위)]	공부면적 (m ²)	대부·사용허가 면적(m ²)	산지전용면적 (m ²)	기간	비고

②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매수인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계약담당관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계약담당관과 매수인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관에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매수자》

-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 우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대부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인)

단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